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30 호 2022. 2. 17.(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28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9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87호선 외 2개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0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3호[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4호[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5호[도로명주소 변경·폐지 고시] 17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11호[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1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14호[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16호[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2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17호[「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3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25호[도로점용(굴착) 기간연장허가 공고] 3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30호[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3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31호[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3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35호[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36호[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4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41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4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공고 제2022-12호[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4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공고 제2022-13호[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78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복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복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 복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28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송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260-10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양정동 776-36번지	하천의 명칭	○ 양정천
점용 내용	○ 공작물의 신축(도시가스관 매설)	점용 면적	○ 일시: 5.40m ² ○ 계속: 0.18m ²
점용 기간	○ 일시: 2022. 2. 15. ~ 2022. 3. 4. ○ 계속: 2022. 3. 5. ~ 2026.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87호선 외 2개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87호선 외 2개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84, 소로3-186호선, 소로3-187호선)사업

나. 명 칭: 창평동 원지마을 일원(소로3-187호선 외 2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171-4번지 일원(변경없음)

3. 사업규모(면적변경)

┌ 당 초 : 도로개설 L = 238m, B=4~6m, A= 1,432m²

└ 변 경 : 도로개설 L = 238m, B=4~6m, A= 1,470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가. 2020. 6. 11. ~ 2025. 6. 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참조

7. 열람기간: 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 간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복구청 건설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건설과 (☎052-241-7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필지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분할 전	면적(m ²)	당초 편입면적 (m ²)	분할 후	변경 편입면적 (m ²)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창평동	1178	478	3	1178-2	3	도로	울산 광역시					
2	창평동	1171-4	176	176	1171-4	176	전	울산 광역시 북구		전필			
3	창평동	1195	548	548	1195	548	도로	농림축산 식품부		전필			
4	창평동	1194	668	496	1194	37	구거	농림축산 식품부					
					1194-2	493	구거	농림축산 식품부					
5	창평동	1185-8	2521	50	1185-18	50	답	박○○외 1인	울산 남구 달동 1395-13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지상권	
6	창평동	762-15	4	4	762-15	4	답	권○○	울산 중구 남외로 60	전필			
7	창평동	762-11	22	22	762-11	22	대	권○○	울산 중구 남외로 60	전필			

연번	소재지	필지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분할 전	면적(m ²)	당초 편입면적 (m ²)	분할 후	변경 편입면적 (m ²)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8	창평동	762-13	34	34	762-13	34	전	권○○	울산 중구 남외로 60	전필			
9	창평동	759-2	20	4	759-2	4	도로	박○○	울주군 농소면 창평리 773				
10	창평동	762-8	29	9	762-17	9	답	박○○외 1인	울산 남구 달동 1395-13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지상권	
11	창평동	762-4	185	17	762-16	18	전	박○○외 1인	울산 남구 달동 1395-13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지상권	
12	창평동	760-5	245	35	760-8	37	전	강○○	울산 중구 서원3길 48				
13	창평동	760-1	21	5	760-7	5	도로	강○○	울산 중구 서원3길 48				
14	창평동	1276-1	4650	26	1276-13	26	도로	농림축산 식품부					
15	창평동	1276-5	80	3	1276-14	4	도로	농림축산 식품부					
계				1432		147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2. 2. 17.
2. 점용·사용의 목적 : 경작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240-148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815m²
 - 나. 기 간 : 2022. 2. 17. ~ 2026. 12.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이*길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23길 8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33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조성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동 104-7번지 일원

3. 사업개요

(당초) 59,174m²

(변경) 59,355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신명바다청소년야영장 대표이사 박만석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동 104-7번지

5. 사업기간 : 2014. 8. 28. ~ 2023.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위치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성명	주 소
합 계				당초 : 59,174 변경 : 59,355	-	면적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편입면적 104-2번지 제외)
1	신명동 산30	임	당초 : 37,586 변경 : 0	당초 : 11,595 변경 : 0	이O현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 야영장	울산시 중구 ***로 **, ***호(대화동) 울산시 북구 신명동 104-7
	104-10		당초 : 0 변경 : 11,595	당초 : 0 변경 : 11,595		
2	신명동 104-7	임	당초 : 35,511 변경 : 35,511	당초 : 35,511 변경 : 35,511	고O구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 야영장	울산시 울주군 **면 **로 *** 울산시 북구 신명동 104-7
3	신명동 104-4	임	당초 : 8,022 변경 : 8,022	당초 : 8,022 변경 : 8,022	고O구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 야영장	울산시 울주군 **면 **로 *** 울산시 북구 신명동 104-7
4	신명동 104-2	답	당초 : 260 변경 : 0	당초 : 260 변경 : 0	김O이	남구 **동 1***
5	신명동 104-6	임	당초 : 0 변경 : 1,740	당초 : 0 변경 : 399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 야영장	울산시 북구 신명동 104-7
6	신명동 산1-3	임	당초 : 1,732 변경 : 1,732	당초 : 1,649 변경 : 1,732	고O숙	전라북도 **시 ***길 **,***동 ***호 (**동, ***)
7	신명동 산1-5	도	당초 : 1,843 변경 : 0	당초 : 1,360 변경 : 0	국토부	
	104-11	도	당초 : 0 변경 : 1,374	당초 : 0 변경 : 1,374		
8	신명동 산1-7	임	당초 : 590 변경 : 0	당초 : 553 변경 : 0	국토부	
	104-12	임	당초 : 0 변경 : 554	당초 : 0 변경 : 554		
9	신명동 산27-3	도	당초 : 160 변경 : 160	당초 : 156 변경 : 160	국토부	
10	신명동 산28-1	구	당초 : 4,106 변경 : 4,106	당초 : 68 변경 : 8	농림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대3-38호선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및 녹지(592호) 조성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나. 명 칭 : 북구 중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대3-38호선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및 녹지(592호) 조성공사] 사업

2. 위 치 : 중산동 57-1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15,975.5m²

가. 도로(변경)

규 모				연장(m)	면적(m ²)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중로	3	438	12.5	278	3,311.1	변경없음
대로	3	38	12	323	4,705.2	변경없음
중로	2	549	15~18	342	5,384.4	변경없음
소계				943	13,400.7	

나. 녹지(변경)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비 고
592	녹지	북구 중산동 81-4 일원	2,574.8	변경없음

4. 변경사유

가. 대3-38호선 도시계획시설사업 반쪽도로개설 중 기존도로가 도시계획선에 이격되어 시공되어있어 차로폭원의 확보를 위하여 신설보도를 7.0m에서 6.3m로 축소하여 재시공함에 따른 변경

나. 기타 공사 중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변경 (가로수 간격 및 우·오수 추가 시공)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 대표 차기환

나. 주소 : 울산 북구 신천로 55-21, 3층 301호 신천하람타운(신천동)

6. 사업기간 : 2019. 3. 21. ~ 2022. 6. 3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참조

8. 기타 상세한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중산동	57-1	답	192.0	19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2	중산동	58-1	전	32.0	3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	중산동	60	답	50.0	5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4	중산동	61-5	전	2.0	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	중산동	61-10	전	76.0	7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6	중산동	61-11	전	61.0	6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7	중산동	62-1	대	39.0	3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8	중산동	63-4	답	200.0	20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	중산동	63-5	답	11.0	1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0	중산동	63-13	답	228.0	22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1	중산동	63-14	답	3.0	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2	중산동	63-15	답	394.0	39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3	중산동	63-16	답	8.0	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4	중산동	63-20	답	299.0	29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5	중산동	77-1	과	3.0	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6	중산동	78-2	과	1.0	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7	중산동	78-3	과	450.0	45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8	중산동	78-4	과	364.0	36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9	중산동	81-3	답	582.0	58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20	중산동	81-4	답	279.0	27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1	중산동	81-5	답	100.0	10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22	중산동	82-5	도	68.0	6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23	중산동	82-6	도	48.0	4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24	중산동	82-8	답	45.0	4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25	중산동	82-9	답	18.0	1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26	중산동	82-10	답	60.0	6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27	중산동	82-11	답	84.0	8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28	중산동	83-3	대	125.0	12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29	중산동	83-7	대	272.0	27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0	중산동	83-8	대	183.0	18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1	중산동	83-10	대	70.0	7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2	중산동	83-11	대	105.0	10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3	중산동	83-13	대	26.0	2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4	중산동	86-6	전	90.0	9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5	중산동	86-9	전	267.0	26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6	중산동	86-10	전	27.0	2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7	중산동	86-11	전	108.0	10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8	중산동	86-12	전	202.0	20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9	중산동	86-14	전	1.0	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40	중산동	87-3	도	37.0	3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41	중산동	87-4	도	40.0	4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42	중산동	87-6	전	139.0	13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43	중산동	87-7	전	90.0	9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44	중산동	88-7	과	40.0	4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45	중산동	88-16	과	9.0	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46	중산동	88-17	대	34.0	3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47	중산동	88-19	도	10.0	1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48	중산동	94-6	입	254.0	25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49	중산동	94-7	입	116.0	11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0	중산동	94-9	도	1.0	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1	중산동	95	대	69.0	6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2	중산동	95-1	대	121.0	12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3	중산동	96-31	과	2.0	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4	중산동	1185-1 6	도	30.0	3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5	중산동	1185-1 7	도	24.0	2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6	중산동	1185-1 9	도	16.0	1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7	중산동	1185-2 0	도	26.0	2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8	중산동	1185-2 2	도	27.0	2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9	중산동	1185-2 3	도	21.0	2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60	중산동	1185-2 4	도	73.0	7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61	중산동	1186-2 0	구	33.0	33.0	중산매곡 지역주택 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62	중산동	1186-2 1	구	37.0	37.0	중산매곡 지역주택 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63	중산동	1186-2 3	구	52.0	52.0	중산매곡 지역주택 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64	매곡동	470-10	답	41.0	41.0	중산매곡 지역주택 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65	매곡동	471-8	전	356.0	356.0	중산매곡 지역주택 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66	매곡동	471-10	답	136.0	136.0	중산매곡 지역주택 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67	매곡동	471-11	전	1.0	1.0	중산매곡 지역주택 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68	매곡동	471-12	전	226.0	226.0	중산매곡 지역주택 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69	매곡동	472-6	답	8.0	8.0	중산매곡 지역주택 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70	매곡동	479-2	유	3.0	3.0	울산광역시					변경 없음
71	매곡동	479-1	유	97.0	97.0	중산매곡 지역주택 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72	매곡동	480-4	답	232.0	232.0	중산매곡 지역주택 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73	매곡동	480-5	과	803.0	803.0	중산매곡 지역주택 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74	매곡동	481-4	전	79.0	79.0	중산매곡 지역주택 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75	매곡동	481-5	전	640.0	640.0	중산매곡 지역주택 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76	매곡동	481-8	전	356.0	356.0	중산매곡 지역주택 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77	매곡동	482-4	전	260.0	260.0	중산매곡 지역주택 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78	매곡동	482-5	전	92.0	92.0	중산매곡 지역주택 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79	매곡동	482-6	전	226.0	226.0	중산매곡 지역주택 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80	매곡동	482-7	전	7.0	7.0	중산매곡 지역주택 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81	매곡동	483-2	전	14.0	1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82	매곡동	483-8	전	78.0	7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83	매곡동	483-31	도	95.0	95.0	울산광역시					변경 없음
84	매곡동	483-10	전	55.0	5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85	매곡동	483-32	전	232.0	23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86	매곡동	483-12	전	24.0	2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87	매곡동	483-18	전	144.0	14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88	매곡동	483-19	전	51.0	5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89	매곡동	483-20	전	19.0	1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0	매곡동	483-22	전	2.0	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1	매곡동	483-23	전	11.0	1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2	매곡동	483-24	전	14.0	1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3	매곡동	483-25	전	156.0	15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4	매곡동	483-27	전	31.0	3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5	매곡동	483-29	전	6.0	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6	매곡동	483-30	전	5.0	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7	매곡동	484-1	답	250.0	25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8	매곡동	485-18	답	119.0	11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9	매곡동	485-2	답	264.0	26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00	매곡동	485-19	도	1,218.0	1,218.0	울산광역시					변경 없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01	매곡동	485-14	답	78.0	7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02	매곡동	485-15	답	323.0	32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03	매곡동	485-17	답	129.0	12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04	매곡동	496-36	답	16.0	16.0	울산광역시					변경 없음
105	매곡동	496-37	답	12.0	12.0	울산광역시					변경 없음
106	매곡동	497-7	답	118.0	118.0	울산광역시					변경 없음
107	매곡동	497-3	답	15.0	1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08	매곡동	498-9	도	732.0	732.0	울산광역시					변경 없음
109	매곡동	499-8	답	447.0	44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10	매곡동	500	답	7.0	7.0	울산광역시					변경 없음
111	매곡동	500-10	답	234.0	23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12	매곡동	500-2	답	58.0	5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13	매곡동	826-47	구	153.0	15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14	매곡동	826-41	구	70.0	7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15	매곡동	826-43	구	34.0	3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16	매곡동	826-45	구	158.0	15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17	매곡동	832-21	도	37.0	3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18	매곡동	832-2	도	34.0	3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19	매곡동	832-14	도	58.0	5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20	매곡동	832-15	도	52.0	5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21	매곡동	832-17	도	41.0	4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22	매곡동	832-19	도	23.0	2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23	매곡동	833-18	도	176.0	17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24	매곡동	833-19	도	125.0	12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25	매곡동	833-15	도	30.0	3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합 계				15,985.0	15,985.0						변경 없음
확정측량면적					15,975.5						변경 없음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35호

도로명주소 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변경

지번주소	종전도로명주소	변경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진장명촌지구 31B 8L	진장로 51	진장24길 40	2022. 2. 17.	주소사용편의를 위한 변경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진장23길 9	매곡동 234	2022. 2. 17.	건축물 멸실
달현길 27	신현동 941	2022. 2. 17.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2.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안내사항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 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2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천구역(운곡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2. 11. ~ 2022. 2. 25.(14일간)
3. **공고장소**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고
소재지	번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m ²)	
울산 복구 어물동	1248번지	미상	미상	불법점용	29	
울산 복구 어물동	1246-1번지	미상	미상	불법점용	160	

5. 공시송달내용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2. 2. 25.(금)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214호

울산광역시 복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18. 7. 1.)으로 최저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현행 규정 전반을 현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 (안 제3조)
- 조사절차, 대상자 선정·관리(안 제4조 ~ 제6조)
- 지원방법, 지원예산 확보 등(안 제7조, 제8조)

3.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 052-241-7621
- 팩스번호 : 052-241-7669
- E-mail : cure09@korea.kr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https://www.bukgu.ulsan.kr/index.do>)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
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
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
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조사 절차)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전까지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신청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에 대해 저소득층 조사 등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 사실을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등) 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 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② ~ ④ (생 략)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 4. 1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216호

울산광역시 복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도시계획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선발인원 : 00명
2. 접수기간 : 2022. 2. 17. ~ 3. 4.(15일 간), 마감일 18:00한
3.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복구 도시과 (☎ 052-241-7993)
4.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 편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복구청 도시과
 - 이 메 일 : banggiwon@korea.kr
5.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간
6. 제출서류 : 첨부 신청서, 자격증명서류, 자기소개서(자유서식) 1부
7. 선정결과 : 2022. 3. 9.(수) 18:00까지 개별통지
8. 자격요건
 -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 양성평등 정책에 따라 여성 위원 우선 선정(「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복구청 도시과(☎052-241-79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도시계획위원 신청서로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위한 위원 신청, 선발, 활동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직업,

나. 선택항목: 주요경력, E-mail,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존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존기간: 신청 시 ~ 임기만료 시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위원 위촉을 제한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2. 수집 · 이용과 관련된 내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과 동일

3.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위원 위촉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신청 및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217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하여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에 따른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4. 공시송달 당사자 및 내용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수산물직판장	황○호	울산광역시 복구 호계매곡1로 107, 지상1층 (호계동)	영업소 폐쇄

5. 공고(게시)기간 : 2022. 2. 15. ~ 2022. 3. 4.(18일간)
6. 청문일시 및 장소 : 2022. 3. 7.(월) 10:00 울산복구청 4층 환경위생과
7. 청문 주재자 : 울산광역시 복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주무관
8. 유의사항
 -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치고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052-241-7783)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225호

도로점용(굴착) 기간연장허가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기간연장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에스* 주식** 이성*		
주소	경상** **시 진*읍 공단** 77		
점용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문동 616-2번지 일원 ○ 효문동 643-12번지 일원 	노선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2-1 ○ 대2-1
점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관로 매설 	점용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 = 22.1m ○ A(일시) = 33.2m² ○ A(계속) = 5.5m²
점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착공일로부터 30일 - 변경: 착공일로부터 50일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30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의거
지역사회 내 통일 역량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위원회의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 2. 1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인원 : 4명 이내
2. 접수기간 : 2. 16. ~ 2. 25.(10일간), 마감일 18:00한
3.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과 자치행정담당 (☎ 052-241-7262)
4.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주민소통과 자치행정담당
 - 이메일 : ciel1027@korea.kr
5. 제출서류 : 첨부 신청서 1부
6.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7. 자격요건
 - 가. 평화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 나. 통일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8. 선정결과 : 2022. 3. 2.(수)까지 선정자 개별통지
9.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주민소통과(241-7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 신청서

성 명		사 진
생년월일		
주 소		
직 장 명 (직장주소)		
연 락 처	휴 대 폰 :	자 택 :
E-mail		
최종학력 (전공)		
주요경력		
신청사유 및 활동계획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위원회 위원 관리 및 체납세 확인 조회
- 개인정보 이용 기간 : 임기 만료시까지
-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빈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231호

울산광역시 복구 관광진흥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울산광역시 복구 관광진흥 조례」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2. 2. 17.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모집인원 : 6명 이내
2. 모집기간 : 2022. 2. 17. ~ 2022. 2. 28.(11일간)
3. 자격요건
 - 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 관광분야 전문가
나. 그 밖에 관광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접수방법 : 모집기간 내 신청서(붙임) 작성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가. 방문 및 우편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복구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241-7732)
 - 나. 이메일 : thoris19@korea.kr
5. 제출서류
 - 가. 신청서 1부(정보제공 동의 포함)
 - 나. 재직 및 경력증명 사본 등 각 1부
(해당자에 한함/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6. 선정결과 : 2022. 3. 8.(화) / 개별통지

※ 발표일시는 위원 모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활동내용 : 연 2회 이상 회의 참석(서면 가능)

가.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다.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라.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등

8. 임 기 : 2년(2회 연임 가능)

9. 위원 해촉 사유

가.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나.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난 경우

다.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라.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기 타

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관련)

나. 구 산하 각종 위원회 중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될 수 없음

다. 공개모집에 미달되거나 없을시 관련기관·단체·부서 추천으로 모집할 수 있음

라.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관광진흥과(☎241-7732)로 문의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위원회 위원 신청서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직 장 명 (직 위)			
연 락 처	휴 대 폰 :	자 택 :	
E-mail		성 별	남(), 여()
주 소			
최종학력	학 교	학 과	전 공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2022. 2. .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업, 체납여부, 포상실적, 경력사항 등
2.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위원 자격요건 및 기타 제출자료의 진위여부 검증, 위원회 활동 참여
3.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위원 응모 신청일부터 위원 임기 만료일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 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며,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나, 수집 동의 거부시 위원 선정이 불가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서명)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235호

울산광역시 복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경로당 방송장비 수리·교체 관련 예산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유·무선 방송 장비' 포함 (안 제4조제3항)

3.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
-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4. 입법문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노인장애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1)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2) 전화번호 : 052)241-7662, 팩스번호 : 052)241-7669

3) 전자우편(E-mail) : jsun0319@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 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장비를 포함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및 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비.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라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신고된 경로당의 경우 보수에 한한다.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수 있다.

□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비용부담) ①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동장 또는 경로당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경로당의 이용자가 시설 등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3. 도시계획 편입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②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
주택 단지 내에 신고된 경로당의 경우 "보수의 범위"는 도배·장판·창호·전등
·씽크대 교체 등 건축물 구조체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소규모 보수에 한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236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2. 1. 13.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2조 ~ 제3조)
- 다. 회의(안 제4조)
- 라. 위원회의 직원(안 제5조)
- 마.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수당 등(안 제6조 ~ 제7조)
- 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8조)
- 사. 운영세칙(안 제9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4.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10.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1) 전자우편 : kyusickim@korea.kr
-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 3) 전 화 : 052-241-7103 / 팩 스 : 052-241-7109

6. 기타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 등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241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 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2021. 3. 23.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실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명칭 변경, 실무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10조)
-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규정 신설(안 제10조제5항)

3.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4, 평생학습관 3층(교육청소년과)
- 전화번호 : 052-241-7371
- 팩스번호 : 052-241-7399
- 전자우편(E-mail) : bukgedu@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s://www.bukgu.ulsan.kr/index.do>) “고시 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울산광역시 복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2조 중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13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심의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위원회”을 “심의위원회”로, “운영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실행위원으로”를 “실무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실무위원”으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를 “실무위원회 위원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실행위원회는”을 “실무위원회는”으로, “실행위원회의”를 “실무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실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실행위원장”을 “실무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실행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실행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u></p>	<p><u>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u>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u>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u> 구 성 및 운영----- -----.</p>
<p>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u>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u>(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조(설치) ----- ----- ----- -----<u>청소년복지심의위원 회</u>(이하 “심의위원회”----- -----.</p>
<p>제3조(구성) ① <u>운영위원회</u>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3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u>운영위원회</u>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u>운영위원회</u>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p>	<p>제3조(구성) ① <u>심의위원회</u>----- ----- <u>15명</u> 이내----- ----- ----- ② <u>심의위원회</u>----- ----- ----- ③ <u>심의위원회</u>----- ----- 1. 2. (현행과 같음)</p>

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 심의위원회-----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

-----.

제7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을 회의록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

-----.

제8조(출석 및 발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출석 및 발언) -----심의위원회-----

-----.

제9조(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9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⑤ 그 밖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의 -----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으로-----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실무위원-----

-----실무위원회
위원장-----.

④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⑥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장-----
-.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공고 제2022-12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2022. 1. 1.자 우리구 행정기구 개편으로 도서관과 소속이 사업소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구립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에 위치한다.

나. 구립도서관 관련 근거법령 변경(안 제3조)

- 「도서관법」 제2조제4호 →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제1호

다.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으로 조정(안 제7조)

라. 사업소 전환에 따른 “구청장”을 “구립도서관장”으로 변경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마.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6조, 제8조)

3. 근거법규

가. 「도서관법」 제4조

나.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제1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구립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 구립도서관(중앙도서관)
- 전화번호 : 052-241-7411
- 팩스번호 : 052-241-7409
- E-mail : p5913@korea.kr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https://www.bukgu.ulsan.kr/index.do>)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복구 두부곡1길 9에 둔다. 구립도서관에 속하는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1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수립 및 시행,”을 “수립, 시행 및”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성하며”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립도서관 관장으로 하고”를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지명하고”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사고가 있을”을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청장”을 “구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립도서관”을 “구립도서관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각각 “도서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별표”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구청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각각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 설>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연암동)
매곡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매곡동)
기적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중산동)
농소1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호계동)
농소3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천곡동)
염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염포동)
명촌어린이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명촌동)

[별표2] <개정 16.9.13.>

사용료 등 기준(제12조 관련)

1. 복사료

구 분	규 격	1매 기준	금 액	비 고
전자복사지	A4	단 면	30원	
		양 면	60원	
	B4, A3	단 면	40원	
		양 면	80원	

2.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교육·문화강좌	주 2회	월 10,000원 이하	

가. 강좌는 50분 수업으로 하며, 기준(주 2회) 초과 또는 미만 시는 수강료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나. 수강과 관련한 재료비, 교재비는 수강생 부담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명칭 및 위치) <u>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u></p>	<p>제2조(명칭 및 위치) <u>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에 둔다. 구립도서관에 속하는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u></p>
<p>1. <u>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 (연암동)에 위치한다.</u></p>	<p><삭 제></p>
<p>2. <u>매곡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매곡동)에 위치한다</u></p>	<p><삭 제></p>
<p>3. <u>기적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 (중산동)에 위치한다.</u></p>	<p><삭 제></p>
<p>4. <u>농소1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 (호계동)에 위치한다.</u></p>	<p><삭 제></p>
<p>5. <u>농소3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 (천곡동)에 위치한다.</u></p>	<p><삭 제></p>
<p>6. <u>염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 (염포동)에 위치한다.</u></p>	<p><삭 제></p>
<p>7. <u>명촌어린이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 (명촌동)에 위치한다.</u></p>	<p><삭 제></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3조(정의) ----- -----.</p>
<p>1. “구립도서관”이란 「<u>도서관법</u>」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p>	<p>1. ----- 「<u>도서관법</u>」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p>

현 행	개 정 안
<p>공도서관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p>	<p>----- ----- -----.</p>
<p>2. ~ 5. (생략)</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제6조(기능) ----- -----.</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p>	<p>2. ----- <u>수립, 시행 및</u> -----</p>
<p>3. ~ 6. (생략)</p>	<p>3. ~ 6.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하며</u>,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제7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u> ----- -----.</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u>구립도서관 관장</u>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p>	<p>④ ----- ----- <u>해당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지명하고</u>----- -----.</p>
<p>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p>	<p>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u>사고가 있을 때</u>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 <u>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u> -----.</p>
<p>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u>사고가 있을 때</u>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p>	<p>③ ----- <u>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u>-----</p>

현 행	개 정 안
<p>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p> <p>제11조(사용허가) ① 구립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도서관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u>구청장</u>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p> <p>제11조(사용허가) ① ----- ----- ----- ----- <u>구립도서관장</u> (이하 “<u>도서관장</u>”이라 한다)----- -----.</p>
<p>② (생략)</p> <p>제12조(사용료 등) ① <u>구립도서관</u>의 사용과 도서관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p> <p>②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별표</u>에서 정하는 복사료를 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용료 등) ① <u>구립도서관 시설</u> ----- -----.</p> <p>② -----<u>하려는</u> <u>경우에는 별표 2</u>----- ----- -----.</p>
<p>1. (생략)</p> <p>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u>구청장</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③ <u>구청장</u>은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강좌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의 징수 기준은 <u>별표</u>와 같다. 다만,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u>구청장</u>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강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p>	<p>1. (현행과 같음)</p> <p>2. ----- <u>도서관장</u>----- <u>장</u>-----</p> <p>③ <u>도서관장</u>----- ----- ----- <u>별표 2</u>----- -----.</p> <p>----- <u>도서관장</u>----- ----- ----- ----- -----.</p>

현 행	개 정 안
<p>면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u>구</u>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u>도서관장</u>----- ----- -----.</p>
<p>1. ~ 2. (생 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u>구청장</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p>	<p>② <u>도서관장</u>----- ----- --.</p>
<p>1. ~ 2. (생 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15조(출입의 제한) <u>구청장</u>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제15조(출입의 제한) <u>도서관장</u>----- ----- -----.</p>
<p>제16조(관외대출) ① <u>구청장</u>은 다음</p>	<p>제16조(관외대출) ① <u>도서관장</u>-----</p>
<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p>	<p>----- ----- --.</p>
<p>1. ~ 4. (생 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도서관자료와 그 밖에 <u>구청장</u>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 ----- <u>도서관장</u>----- ----- -----.</p>
<p>제18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구립도서관에 자료</p>	<p>제18조(위탁자료) ① ----- -----</p>

현 행	개 정 안																
<p>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u>구청장</u>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20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u>구청장</u>은 구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p> <p>② <u>구청장</u>은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신 설></p> <p>[별 표] (생 략)</p>	<p>----- ----- <u>도서관장</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u>도서관장</u> ----- -----.</p> <p>② <u>도서관장</u>----- -----.</p> <p>③ (현행과 같음)</p> <p>[별 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813 1299 1436 1612"> <thead> <tr> <th>명 칭</th> <th>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중앙도서관</td> <td>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연암동)</td> </tr> <tr> <td>매곡도서관</td> <td>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매곡동)</td> </tr> <tr> <td>기적의도서관</td> <td>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중산동)</td> </tr> <tr> <td>농소1동도서관</td> <td>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호계동)</td> </tr> <tr> <td>농소3동도서관</td> <td>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천곡동)</td> </tr> <tr> <td>염포양정도서관</td> <td>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염포동)</td> </tr> <tr> <td>명촌어린이도서관</td> <td>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명촌동)</td> </tr> </tbody> </table> <p>[별 표 2] (현행 [별표]와 같음)</p>	명 칭	위 치	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연암동)	매곡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매곡동)	기적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중산동)	농소1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호계동)	농소3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천곡동)	염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염포동)	명촌어린이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명촌동)
명 칭	위 치																
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연암동)																
매곡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매곡동)																
기적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중산동)																
농소1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호계동)																
농소3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천곡동)																
염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염포동)																
명촌어린이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명촌동)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개정 21.12.7.><시행 2022.12.8.>

□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2조(관장) ① 사업소에 각각 관장을 둔다.

② 사업소별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한다.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별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1. 구립도서관

- 가. 도서관 정책, 도서관 관리 및 운영
- 나. 독서문화 진흥사업
- 다. 지역문화·사회교육에 관한 정보개발 및 제공
- 라.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발전에 관한 사항

[별표 2]

사업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u>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u>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연암동)	<u>북구 일원</u>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연암동)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공고 제2022-1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 이유

- 가. 구립도서관 회원의 통합 대출권수를 책이음서비스 관리규정과 일치되도록 개정하여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 나. 우리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도서관과에서 사업소로 변경됨에 따른 용어 등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 실정에 맞게 “독서실”을 “열람실”로 용어 변경(제3조)
- 나. 도서관회원과 책이음회원간 자료 통합 대출권수 통일(제7조)
 - 도서관회원 대출권수(기존 20권 → 변경 30권)
- 다. 사업소 전환에 따른 “구청장”을 “구립도서관장”으로 일괄개정하고,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안 제3조~제9조, 제11조~제13조, 제15조~제16조, 제18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제6호서식~제7호서식, 제9호서식, 제12조서식, 제14호서식, 제16호서식, 제18호서식 등)

3. 근거법령

- 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제13조
- 나. 「책이음 서비스 회원 관리 규정」 제8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구립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 구립도서관(중앙도서관)
- 전화번호 : 052-241-7411
- 팩스번호 : 052-241-7409
- E-mail : p5913@korea.kr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https://www.bukgu.ulsan.kr/index.do>)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독서실”을 각각 “열람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청장”을 “도서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구청장”을 “도서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시하고”를 “보여 주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시하여야”를 각각 “보여 주어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구청장”을 “도서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각각 “도서관장”으로, 같은 항 중 “퇴관”을 “퇴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권”을 “30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구청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청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발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구청장”을 “도서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도서관장”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강사의 선정 및 강사료)”를 “(강사의 선정 및 강의료)”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청장”을 각각 “도서관장”으로, 같은 항 중 “접수여부”를 “접수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구청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구청장”을 각각 “도서관장”으로, 같은 항 중 “대해”를 “대하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구청장”을 “도서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날로부

터”를 “날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반납하여”를 “반납해”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지연될”을 “늦어질”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북구청장”을 “구립도서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기호(*) 중 “휴대폰”을 “휴대전화”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북구청장”을 각각 “북구 구립도서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휴대폰”을 “휴대전화”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북구청장”을 “북구 구립도서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북구청장”을 “북구 구립도서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회원가입(회원증 재발급) 신청서				결	담당자	담 당	관 장
*회원종류(√ 표시) : <input type="checkbox"/> 도서관회원 <input type="checkbox"/> 책이음회원 <input type="checkbox"/> 가족회원				재			
*성 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 소							
*휴대전화				*집 전 화			
소 속 (학교 직장 등)	※ 문자서비스(문자메시지)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는 필수항목입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법 정 대 리 인	성 명	신청자와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가족회원 등록시 기재요망	※ 가족ID부여번호(관리자용) :				발급형태(가입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탈퇴 <input type="checkbox"/>		
	성명	관계	생년월일	대출자번호	동의(서명)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에 회원가입(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하며, 귀 도서관의 관련 규정을 지키고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에 동의 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장 귀하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증 (재)발급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주민등록 등본(만 17세 미만) -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 · 가족회원 신청 시 가족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도서관회원증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과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책이음이용증은 전국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대출 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만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도서관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미이행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가족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연체중 가족구성원이 있을 시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제한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08. 6. 2, 09. 7. 1., 11. 1. 10., 21. 3. 4.>

자료복사 신청서

일련 번호	신 청 자	자 료 명	복 사 용 지						
			규격	단가 (원)	매수	금액 (원)			
			A4	단면	30				
				양면	60				
			B4	단면	40				
				양면	80				
			A3	단면	40				
				양면	80				
			합			계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자료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08. 6. 2, 11. 1. 10.>

반 납 독 촉 장

□ 주 소 :

□ 성 명 :

귀하께서 울산광역시 북구 ()도서관으로부터 대출한 도서관자료(도서)의 반납기한이 다음과 같이 경과되었으나 아직까지 반납되지 않고 있어 독촉하오니,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년 월 일까지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납이 늦어질 경우 지연일수만큼 도서대출이 정지 됩니다.

등록번호		대출일		반납예정일	
도 서 명					
등록번호		대출일		반납예정일	
도 서 명					
등록번호		대출일		반납예정일	
도 서 명					
등록번호		대출일		반납예정일	
도 서 명					
등록번호		대출일		반납예정일	
도 서 명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장

【별지 제11호서식】

()도서관부속시설사용(변경)신청서

성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단체)		연락처	
주 소					
행 사 의 명 칭					
행 사 의 내 용					
사용기간 및 시간	부터 :	년	월	일	시
				(일 시간 회)	
	까지 :	년	월	일	시
사 용 시 설					

※ 수강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도서관 부속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속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도서관 부속시설사용을 신청(변경) 하오니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행사계획표 1부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12. 11. 21>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서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행 사 명			
시 설 명	도서관 실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용인원	명
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장

직인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08. 6. 2., 11. 1. 10., 14. 12. 22.>

변 상 통 지 서

제 호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귀하는 아래와 같이 ()도서관의 도서관자료를 분실(훼손)하였기에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통지하오니, 정해진 기일 내에 변상하시기 바랍니다.

- 변상하여야 할 자료(도서) 및 변상금액

도서등록번호	자료(도서) 명	대출(열람)일자	반납일자	변상금액

- 변상금 납부기일 : 년 월 일까지
- 변상금 납부장소 : 구 금고

변상통지일 :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장

현행	개정안
<p>임시 휴관일로 정한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u>경우에는</u> 예외로 한다.</p>	<p>----- ----- ----- ----- <u>경우는</u> -----.</p>
<p>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u>구청장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1. ~ 4. (생략)</p> <p>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도서관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u>제시하고</u> 도서관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노인, 아동 등 정보 취약계층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회원증 재발급) 신청서 제출로 회원가입 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③ 회원 간에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u>제시하여야</u> 한다.</p>	<p>제5조(회원가입) ① ----- ----- ----- ----- <u>도서관장</u>-----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보여 주고</u> ----- ----- -----.</p> <p>1.·2.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보여 주어야</u> ----.</p>

현 행	개 정 안
<p>④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자료의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u>제시하여야</u> 한다. 다만,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대리 대출을 할 수 있다.</p>	<p>④ ----- ----- ----- <u>보여 주어야</u> ----- -----</p>
<p>⑤ ~ ⑦ (생략)</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p>	<p>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 ----- -----</p>
<p>1. 도서관자료를 <u>구청장의</u> 승인 없이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금지</p>	<p>1. ----- <u>도서관장</u>----- -----</p>
<p>2. 열람 중 잡담, 수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금지</p>	<p>2. ----- <u>다른 사람</u>-----</p>
<p>3.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u>구청장이</u> 정하는 사항</p>	<p>3. ----- --- <u>도서관장</u>-----</p>
<p>② <u>구청장은</u>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u>퇴관</u>을 명할 수 있다.</p>	<p>② <u>도서관장</u>----- ----- <u>퇴장</u>-----.</p>
<p>제7조(자료열람 및 대출) ① (생략)</p>	<p>제7조(자료열람 및 대출) ① (현행과 같음)</p>
<p>② 관외대출은 도서관 당 5권 이내, 도서관 통합 <u>20권</u>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u>경우</u>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② ----- ----- <u>30권</u> ----- ----- ----- . ----- ----- <u>경</u> ----- ----- ----- <u>우</u>는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③ <u>구청장</u>은 제2항의 강좌 수강신청에 대하여 수강대상자 결정은 별도 규정이 <u>없는 한</u> 신청접수 순서로 한다.</p>	<p>③ <u>도서관장</u>----- ----- ----- <u>없으면</u> ----- -----.</p>
<p>④ (생략) 제12조(강사의 선정 및 강사료) ① · ②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강사의 선정 및 강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자원봉사자) ① <u>구청장</u>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자원봉사자) ① <u>도서관장</u>----- ----- ----- ----- -----.</p>
<p>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u>구청장</u>은 각 도서관의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u>접수여부</u>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 ----- ----- ----- <u>도서관장</u>----- ----- <u>접수 여부</u>----- -----.</p>
<p>③ <u>구청장</u>은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매월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 및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u>도서관장</u>----- ----- -----.</p>
<p>제15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위해 도서관 부속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15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 ----- ----- ----- ----- -----.</p>

현 행	개 정 안
<p>1. ~ 3. (생 략)</p> <p>4. 그 밖에 <u>구청장</u>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p> <p>② (생 략)</p> <p>제16조(부속시설의 사용신청·허가)</p> <p>①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 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서관부속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u>구청장</u>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u>구청장</u>은 부속시설 사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u>구청장</u>은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 허가사항에 대해 별지 제13호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대장에 등재, 정리하여야 한다.</p> <p>제18조(변상조치) ① <u>구청장</u>은 도서관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 받은 사람이 해당 도서관 자료를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열람인 또는 대출 신청인에게 변상을 명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도서관장</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부속시설의 사용신청·허가)</p> <p>① ----- ----- ----- ----- <u>도서관장</u>----- ----- ----- -----.</p> <p>② <u>도서관장</u>----- ----- ----- -----.</p> <p>③ <u>도서관장</u>----- ----- <u>대하여</u> ----- ----- -----.</p> <p>제18조(변상조치) ① <u>도서관장</u>----- ----- ----- ----- ----- -----.</p>

현 행	개 정 안
<p>② 변상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은 동일 도서관자료를 구입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도서관자료의 구입이 어려울 경우 해당도서관자료의 정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p>	<p>② ----- 날부터 ----- . ----- ----- ----- ----- .</p>
<p>③ <u>구청장</u>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변상금은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u>도서관장</u>----- ----- ----- ----- .</p>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회원가입(회원증 재발급) 신청서				
*회원종류(√ 표시) : <input type="checkbox"/> 도서관회원 <input type="checkbox"/> 책이음회원 <input type="checkbox"/> 가족회 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 소				
*휴대전화			*집 전 화	
소 속 (학교, 직장 등)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는 필수항목입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법 정 대리인	성 명		신청자와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가족회원 등록시 기재요망	* 가족ID부여번호(관리자용) : _____ 발급형태(가입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탈퇴 <input type="checkbox"/>)			
	성명	관계	생년월일	대출자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에 회원가입(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하며, 귀 도서관의 관련 규정을 지키고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에 동의 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 청 인 : _____ (서명 또는 날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증(재)발급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주민등록 등본(만 17세 미만) -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제학 또는 재직증명서 · 가족회원 신청 시 가족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도서관회원증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과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책이음이용증은 전국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대출 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만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도서관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미이행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가족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연체중 가족구성원이 있을 시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제한합니다. 			
	대			

[앞면]

회원가입(회원증 재발급) 신청서				
*회원종류(√ 표시) : <input type="checkbox"/> 도서관회원 <input type="checkbox"/> 책이음회원 <input type="checkbox"/> 가족회 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 소				
*휴대전화			*집 전 화	
소 속 (학교, 직장 등)		*문자서비스(문자메시지)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는 필수항목입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법 정 대리인	성 명		신청자와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가족회원 등록시 기재요망	* 가족ID부여번호(관리자용) : _____ 발급형태(가입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탈퇴 <input type="checkbox"/>)			
	성명	관계	생년월일	대출자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에 회원가입(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하며, 귀 도서관의 관련 규정을 지키고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에 동의 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 청 인 : _____ (서명 또는 날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장 귀하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증(재)발급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주민등록 등본(만 17세 미만) -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제학 또는 재직증명서 · 가족회원 신청 시 가족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도서관회원증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과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책이음이용증은 전국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대출 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만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도서관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미이행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가족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연체중 가족구성원이 있을 시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제한합니다. 			
	대			

현행

개정안

[뒷면]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도서관회원

책이음회원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하나의 회원등으로 모든 참여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서비스는 회원 개인을 식별하고, 책이음서비스의 제공, 정보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집전화), 사진
나. 선택항목 : 학교·직장명
다. 사용 중 생성 항목 : 대출자번호, 성별, 관리구분, 소속코드, 직급코드, 회원구분, 가입자일시, 우편발송지역, 회원상태, 등록일자, 수정일자, 제작일자, 대출정지일, 대출정지회원사유, 회원종류발급일, 회원종류발급일, 현재대출권수, 현재연체권수, 누적연체횟수, 누적연체일, 본인확인코드 등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존기간 : 가입 시 ~ 탈퇴 시
 -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가. 국립도서관 회원 가입 시 가입 도서관에서 개인정보 수집 후 국립도서관 및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서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를 제공받습니다.
나.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현황은 국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usbl.bukgu.ulsan.kr>)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하나의 회원등으로 국립도서관 및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 개인식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휴대전화, 자택, 근무지), 학교·직장명, 사진, E-mail 등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존기간 : 가입 시 ~ 탈퇴 시
 - 5.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 * 본인은 으으으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필요한 본인확인서비스(본인명의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주민번호대체 번호)에 등록되지 않아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확인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예 아니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하나의 회원등으로 모든 참여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서비스는 회원 개인을 식별하고, 책이음서비스의 제공, 정보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집전화), 사진
나. 선택항목 : 학교·직장명
다. 사용 중 생성 항목 : 대출자번호, 성별, 관리구분, 소속코드, 직급코드, 회원구분, 가입자일시, 우편발송지역, 회원상태, 등록일자, 수정일자, 제작일자, 대출정지일, 대출정지회원사유, 회원종류발급일, 회원종류발급일, 현재대출권수, 현재연체권수, 누적연체횟수, 누적연체일, 본인확인코드 등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존기간 : 가입 시 ~ 탈퇴 시
 -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가. 책이음가입 시 가입도서관에 개인정보 수집 후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습니다. 또한 참여도서관 중 이용하지 않은 도서관을 최초 이용하는 시점에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나. 참여도서관 및 개인정보 제공현황은 책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book.nl.go.kr>)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하나의 회원등으로 국립도서관 및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 개인식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 대출자번호, 본인확인코드,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나. 참여도서관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휴대전화, 자택, 근무지), 학교·직장명, 사진, E-mail 등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존기간 : 가입 시 ~ 탈퇴 시
 - 5.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 * 본인은 으으으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필요한 본인확인서비스(본인명의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주민번호대체 번호)에 등록되지 않아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확인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예 아니오

본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국립도서관 및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공유(제3자제공)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도서관회원

책이음회원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하나의 회원등으로 모든 참여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서비스는 회원 개인을 식별하고, 책이음서비스의 제공, 정보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집전화), 사진
나. 선택항목 : 학교·직장명
다. 사용 중 생성 항목 : 대출자번호, 성별, 관리구분, 소속코드, 직급코드, 회원구분, 가입자일시, 우편발송지역, 회원상태, 등록일자, 수정일자, 제작일자, 대출정지일, 대출정지회원사유, 회원종류발급일, 회원종류발급일, 현재대출권수, 현재연체권수, 누적연체횟수, 누적연체일, 본인확인코드 등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존기간 : 가입 시 ~ 탈퇴 시
 -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가. 국립도서관 회원 가입 시 가입 도서관에서 개인정보 수집 후 국립도서관 및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서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를 제공받습니다.
나.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현황은 국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usbl.bukgu.ulsan.kr>)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하나의 회원등으로 국립도서관 및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 개인식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휴대전화, 자택, 근무지), 학교·직장명, 사진, E-mail 등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존기간 : 가입 시 ~ 탈퇴 시
 - 5.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 * 본인은 으으으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필요한 본인확인서비스(본인명의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주민번호대체 번호)에 등록되지 않아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확인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예 아니오

본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국립도서관 및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공유(제3자제공)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립도서관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자료복사 신청서

자료복사 신청서

일련 번호	신 청 자	자 료 명	복 사 용 지				
			규격	단가 (원)	매수	금액 (원)	
			A4	단면	30		
				양면	60		
			B4	단면	40		
				양면	80		
			A3	단면	40		
				양면	80		
			합		계		

일련 번호	신 청 자	자 료 명	복 사 용 지				
			규격	단가 (원)	매수	금액 (원)	
			A4	단면	30		
				양면	60		
			B4	단면	40		
				양면	80		
			A3	단면	40		
				양면	80		
			합		계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복사를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반납독촉장

반납독촉장

- 주 소 :
- 성 명 :

- 주 소 :
- 성 명 :

귀하께서 울산광역시 북구 ()도서관으로부터 대출한 도서관자료(도서)의 반납기한이 다음과 같이 경과되었으나 아직까지 반납되지 않고 있어 독촉하오니,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년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울산광역시 북구 ()도서관으로부터 대출한 도서관자료(도서)의 반납기한이 다음과 같이 경과되었으나 아직까지 반납되지 않고 있어 독촉하오니,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년 월 일까지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납이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만큼 도서대출이 정지 됩니다.

※ 반납이 늦어질 경우 지연일수만큼 도서대출이 정지 됩니다.

등록번호		대출일		반납예정일	
도 서 명					
등록번호		대출일		반납예정일	
도 서 명					
등록번호		대출일		반납예정일	
도 서 명					
등록번호		대출일		반납예정일	
도 서 명					
등록번호		대출일		반납예정일	
도 서 명					

등록번호		대출일		반납예정일	
도 서 명					
등록번호		대출일		반납예정일	
도 서 명					
등록번호		대출일		반납예정일	
도 서 명					
등록번호		대출일		반납예정일	
도 서 명					
등록번호		대출일		반납예정일	
도 서 명					

년 월 일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장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수 강 신 청 서 *는 필수항목			
접수번호			
강 좌 명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남/여)	(□남 □여)
	*주 소		
	*연락처	*자 택	보호자
		*휴 대 폰	*문자서비스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
학 교	학과/학년		
※ 수강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출석부 기재, 각종 프로그램관련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수 강 신 청 서 *는 필수항목			
접수번호			
강 좌 명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남/여)	(□남 □여)
	*주 소		
	*연락처	*자 택	보호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
학 교	학과/학년		
※ 수강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출석부 기재, 각종 프로그램관련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와 같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와 같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장 귀하

수 강 증			
강 좌 명	접수번호		
성명(생년월일)	주 소		
수 강 기 간	강좌장소		
그 밖의 사 항	문 의 처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수 강 증			
강 좌 명	접수번호		
성명(생년월일)	주 소		
수 강 기 간	강좌장소		
그 밖의 사 항	문 의 처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장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자 원 봉 사 신 청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 대 폰 (자택전화)
소속단체 (직장/학교)	
자격·면허증	
자원봉사 활동 경력	
희망하는 활동 내용	
활동 가능 시 간	

※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원봉사 활동 등록, 관련 활동 안내사항 통보	1년

※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 이용목적 : 자원봉사 활동관리·인증,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됩니다.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및 자원봉사 실적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도서관 자원봉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자 원 봉 사 신 청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자택전화)
소속단체 (직장/학교)	
자격·면허증	
자원봉사 활동 경력	
희망하는 활동 내용	
활동 가능 시 간	

※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원봉사 활동 등록, 관련 활동 안내사항 통보	1년

※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 이용목적 : 자원봉사 활동관리·인증,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됩니다.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및 자원봉사 실적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도서관 자원봉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장 귀하

현행			
【별지 제11호서식】 ()도서관부속시설사용(변경)신청서			
성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단체)	연락처
주소			
행사의명칭			
행사의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부터 : 년 월 일 시 까지 : 년 월 일 시		
사용시설			
※ 수강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도서관 부속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속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도서관 부속시설사용을 신청(변경) 하오니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행사계획표 1부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11호서식】 ()도서관부속시설사용(변경)신청서			
성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단체)	연락처
주소			
행사의명칭			
행사의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부터 : 년 월 일 시 까지 : 년 월 일 시		
사용시설			
※ 수강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도서관 부속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속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도서관 부속시설사용을 신청(변경) 하오니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행사계획표 1부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12. 11. 21>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12. 11. 21>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서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서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행 사 명			
시 설 명	도서관		실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용 인원	명
그 밖의 사항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행 사 명			
시 설 명	도서관		실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용 인원	명
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장

직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변 상 통 지 서

변 상 통 지 서

제 호

제 호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귀하는 아래와 같이 ()도서관의 도서관자료를 분실(훼손)하였기에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통지하오니, 정해진 기일 내에 변상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아래와 같이 ()도서관의 도서관자료를 분실(훼손)하였기에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통지하오니, 정해진 기일 내에 변상하시기 바랍니다.

○ 변상하여야 할 자료(도서) 및 변상금액

○ 변상하여야 할 자료(도서) 및 변상금액

도서등록번호	자료(도서) 명	대출(열람)일자	반납일자	변상금액

도서등록번호	자료(도서) 명	대출(열람)일자	반납일자	변상금액

- 변상금 납부기일 : 년 월 일까지
- 변상금 납부장소 : 구 금고

- 변상금 납부기일 : 년 월 일까지
- 변상금 납부장소 : 구 금고

변상통지일 : 년 월 일

변상통지 일: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장

관계법령

□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

제11조의2(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개정 21.12.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다.<개정 21.12.23.>

제12조(관장) <신설 18.12.6.>

① 사업소에 각각 관장을 둔다.<개정 21.12.23.>

② 사업소별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한다.<개정 21.12.23.>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별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18.12.6.> <개정 21.12.23.>

1. 구립도서관

가. 도서관 정책, 도서관 관리 및 운영

나. 독서문화 진흥사업

다. 지역문화·사회교육에 관한 정보개발 및 제공

라.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1.12.23.>

□ 「책이음 서비스 회원관리 규정」

제8조(대출 및 반납) ① 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이용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단, 참여도서관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참여도서관은 30권 내에서 대출권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책이음회원 1인당 통합대출권수는 최대 30권이다. <개정 20.12.8.>